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97호 2019. 5. 15.(수)



선	기관의 장
결	

조 례

제250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2508호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13
제2509호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2510호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	29
제2511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2512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2513호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2514호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48
제2515호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53
제2516호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2517호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2518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2519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제2520호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90

규 칙

제1258호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95
제1259호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0
제1260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4
제1261호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15
제1262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20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조례 제250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과 제17조 앞의 “제3장 휴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본직기관의 장”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직기관의 장”을 “군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을 “군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9조와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제21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군수는 공무원”으로 “제20조제4항”을 “제20조제2항”으로 “공제하는”을 “빼는 병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병가일이”를 “병가일수가”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붙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1일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하고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하며 별표 3(종전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장 총칙</u></p> <p>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u>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u>본직기관의 장에게</u> 그 사실을 <u>통보하여야</u> 한다.</p> <p>제10조(파견근무) ① (생략)</p> <p>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u>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u> 그 사실을 <u>통보하여야</u> 한다.</p> <p><u>제3장 휴가</u></p> <p>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u>별표 3과 같다.</u></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u>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p>	<p><u><삭 제></u></p> <p>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u>군수에게</u> 그 사실을 <u>통보해야</u> 한다.</p> <p>제10조(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u>군수에게</u> 그 사실을 <u>통보해야</u> 한다.</p> <p><u><삭 제></u></p> <p>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u>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u>”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u>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u></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u>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u></p> <p>② <u>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u></p> <p>③ <u>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u></p>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으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에 따

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개월-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1.~2. (생략)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항 삭제 2015.6.10.)

③ (생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 한 사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1.~2.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

람만 해당한다.

⑤~⑪ (생략)

<신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⑪ (현행과 같음)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1일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삭제>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때 원경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51
----------	---------

제출일	2019. 4. 8.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2018. 12. 18.)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내용이 조례에 중복·재기재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범위에서 연가사용 기준 등을 정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명시된 조항 삭제

- 1) 연가계획 및 허가(현행 제19조제5항·제6항)
- 2) 연가일수의 공제(현행 제20조제1항·제2항) : 연가일수공제 근거를 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향 규정
- 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현행 별표 3)
- 4) 경조사 휴가일수(안 별표 3)

나.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제한근거 삭제(현행 제19조제2항)

- 1) 연가사용을 촉진을 위해 국외여행 등 특별한 경우에만 연가 7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조항을 삭제

다. 육아시간의 확대 및 운영기준 신설(안 제23조제4항)

- 1)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1일 1시간 사용
⇒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사용

라.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 신설(안 제23조제12항)

- 1) 1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시간외근무 명령 불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사용 불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20.~4. 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조례 제2508호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의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제5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자치분권을 위한 군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기능)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 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거창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거창군의회, 관계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및 활성화 추진,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사업, 각종 시범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12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사업, 각종 시범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행정과장 신 영 수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의안 번호	2019-52
----------	---------

제출일	2019. 4. 8.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거창군의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동시에 정하고 있음을 규정함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3조)

- 1) 3년마다 추진계획 수립·시행
- 2) 자치분권 목표와 추진방향,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세부 실행 계획,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라. 정책과제의 추진, 군민참여의 확대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마. 자치분권협의회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제11조)

- 1) 위임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
- 2) 기능 :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 3)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위원
- 4) 임기는 2년
- 5) 그 밖에 위원 해촉, 위원장 직무, 협의회 운영, 간사를 정함

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경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
-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8,690천원 추경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11.~4. 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조례 제2509호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 제5조 앞의 “제2장 지역치안협의회”, 제15조 앞의 “제3장 민간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1조 중 “범죄행위 피해자 및 민간단체”를 “민간단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설치 및 기능)”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안전보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 제4호) 중 “협의회의

의장이”를 “군수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

제8조제2항 중 “의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분기별 1회”를 “반기별 1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5조(종전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
2.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종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u>범죄행위 피해자 및 민간단체</u>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회적 약자</u>”란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u>범죄행위</u>”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u>범죄예방 봉사활동</u>”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u>민간단체</u>”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p>제3조(군의 책무) ①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p>	<p><u><삭 제></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u>민간단체</u>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사회적 약자</u>”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군의 책무)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u><삭 제></u></p>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치안협의회

제5조(설치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4. (현행과 같음)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의회의 의장
2.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3. 거창소방서장

<신설>

4.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삭제>

제5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4. (현행과 같음)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의회의 의장
2.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3. 거창소방서장

4.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

5.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생략)

<신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필요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간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

제15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4. (생략)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필요경비 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제16조(민간단체의 요건)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범죄피해 지원)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피해(살인, 성범죄 피해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심의를 거쳐 500만원 이내의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에 한정한다.

③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수 또는 거창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추천서에 따라 추천하면 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18조(지원금의 지원 제외) 군수는 제17조에서 정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
2.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삭 제>

<삭 제>

<p>1. <u>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u></p> <p>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p> <p>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	--------------------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15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
2.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 중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2019년도 예산 5천만원 미만임

나. 2019년도 본예산 : 37.8백만원

- 1)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 15백만원
- 2)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일반운영비) : 17.8백만원
- 3)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범죄피해자 지원) : 5백만원

작 성 자 행정과장 신영수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53
----------	---------

제출일	2019. 4. 8.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법무부 권고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는 국가가 구축·운영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 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무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통일적으로 지원을 수행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나.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 추가
(안 제7조제2항제4호)

다. 협의회의 정기회 개최 횟수 변경(안 제10조제2항)

1) 분기별 1회 ⇒ 반기별 1회

라. 민간단체 지원사업 구체화함(안 제15조)

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되는 범죄피해 지원조항 삭제(현행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제5조·제33조·제34조

2)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37,8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11.~4. 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조례 제2510호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

의안 번호	2019-54
----------	---------

제출일	2019. 4. 8.
제출자	거창군수

1. 폐지이유

지역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시행했으나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내용을 중복 재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8.~3. 2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운영 현황

가) 폐지 : 사천시

나) 위원회만 폐지 : 창녕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조례 제2511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고, 2019. 6. 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조제3항(중전 제2항) 중 “이전등록하고”를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본문에 따른”을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로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로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일 것 <p>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고, 2019. 6. 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p>
<p><신 설></p>	

<p>② 장애인 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u>이전 등록하고</u>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③ <u>제1항</u>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u>본문에 따른</u>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p> <p>1. <u>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u></p> <p>2. <u>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u></p> <p>③ 장애인 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u>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u>]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④ <u>제1항·제3항</u>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u>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u>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	---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55
----------	---------

제출일	2019. 4. 8.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2019. 7. 1.)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중증/경증)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안 제2조)

- 1) 감면대상 : 시각장애등급 4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2) 장애정도 규정 신설
 -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감면기한 연장 : 2021. 12. 31. ⇒ 2022. 6. 30.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 명문화(안 제3조)

-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감면 기한 명시함 : 2020. 12. 3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3. 19.~4. 8.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조례 제2512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 지원에 따른 규모”를 “재정지원에 따른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제9조 중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법인 또는 기관”을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국인 관광객"이란 <u>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u> 2. "외국인 관광객"란 <u>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u>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 및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업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을 말한다. <p>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u>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관광진흥법</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 제></p> <p>제3조(<u>다른 조례와의 관계</u>) 관광진흥에 관하여 <u>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 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따른 규모,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따른 대상,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대상업무)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거창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사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2020년 이후 30백만원 지원으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문화관광과장 이 해 용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56
----------	---------

제출일	2019. 4. 8.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광객 유치지원 경쟁에서 지리적 약점을 보완하고자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관광객 유치지원 기준 확대(안 제4조)

- 1)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 국내외 관광객 유치
- 2)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위임

다. 불필요한 규정 정비(현행 제10조제2항·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제76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30,0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3. 11.~4. 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
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조례 제2513호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나목 중 “일반텐트(노지)”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삭 제></u>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 신청서

신청인	주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화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사용 시설	기본시설			
	부대설비			
내용	사용시간			
	사용목적			
	행사내용			
	사용인원	<u>총: 명(남: 명/여: 명)</u>		
	비고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변경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년 월일	(남/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 화 번 호	사무실
					자택
행사의 명칭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시설사용				
	부속설비				
	그밖의사항				
변 경 사 유					
<p>「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야영장 데크 이용권 서식

야영장 데크 이용권 원본	야영장 데크 이용권 영수증
일련번호: 구분: 요금: 원 발행일:	일련번호: 구분: 요금: 원 발행일:
거 창 군 수	거 창 군 수 (인)

120밀리미터×60밀리미터(백상지 100그램/제곱미터)

오토캠핑장 이용권 서식

오토캠핑장 이용권 원본	오토캠핑장 이용권 영수증
일련번호: 구분: 요금: 원 발행일:	일련번호: 구분: 요금: 원 발행일:
거 창 군 수	거 창 군 수 (인)

120밀리미터×60밀리미터(백상지 100그램/제곱미터)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57
----------	---------

제출일	2019. 4. 8.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수승대관광지 내 노지에 있는 일반텐트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미등록 야영지에서 야영행위를 근절하고, 부당한 이용료 징수규정을 정비하여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영장 이용료에서 일반텐트(노지) 규정 삭제(안 별표 1 나목)

(단위: 원)

구분	일반텐트(노지)	야영테크	오토캠핑장	비고
이용료	6,000	10,000	25,000	1박 기준

⇒ 행정안전부 미등록 야영지 감사 지적사항 개선

나. 야영장 이용권 서식 삭제(안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제6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14.~4. 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별지 제1호서식 성별구분 항목 신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조례 제2514호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척·기피·회피)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3조(해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우선 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 조치를 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나. 관련 조문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 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④ (생략)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 행복나눔과장 김 득 환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9-58
----------	---------

제출일	2019. 4. 8.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조성과 권리증진을 도모하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사유를 정함(안 제2조·제3조)
- 다. 위원장 직무와 그 대행을 정함(안 제4조)
- 라. 회의 운영원칙과 간사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마.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우선 보호조치와 자료제출 요구 등을 정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 1차 추경 시 예산 1,400천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2. 13.~3. 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조례 제2515호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복지·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청년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가. 정치·경제·사회·복지·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

-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업지원

- 라. 청년의 생활 안정

- 마.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거창군 청년발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기본계획이 여성 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9조(청년발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교육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1. 거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제척된다.
-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과 창업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 창업지원금 지급 등 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7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행사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포상) 군수는 청년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단체 또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신재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41
----------	---------

발의일자	2019. 4. 18.
발 의 자	이홍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1. 제안이유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3조)
- 나.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제7조)
- 다.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2조)
- 라. 청년의 참여확대, 권리보호 및 증진 등(안 제13조~제19조)
 - 1)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생활안정, 청년문화의 활성화, 권리보호 및 증진,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나. 예산조치 : 향후 반영 예정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교통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3. 26.~3. 3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조례 제2516호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조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조제2호의 사업자”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과 같은 조 제2항 중 “정압시설”을 “정압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시가스과 관련한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2. “분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시설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시설”이란 분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p><삭 제></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이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시설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정압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 ③ (생략)

제6조(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1.~3. (생략)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 ③ (생략)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생략)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⑤ (생략)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이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정압기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1.~3.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60
----------	---------

제출일	2019. 4. 8.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부개정(2014. 5. 28.)되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들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이 조례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현행 제2조)

나. 법령과 달리 규정하여 법령위배소지 위원회구성 규정 정비함(안 제6조)

1) 삭제 :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2)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

3) 법제처 협업 자치법규 정비과제

다. 불필요한 규정 삭제(현행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8.~3. 2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조례 제2517호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p> <p>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p> <p>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p> <p>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p>

- 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

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2.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13.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를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7. (생략)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경상남도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경상남도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삭 제>

제3장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

<삭 제>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군 소속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거창군의회 의원이나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 계획, 재정, 법제도,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기업 고충처리 분야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성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삭 제>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전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장을 녹색성장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삭 제>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61
----------	---------

제출자	2019. 4. 8.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한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계속 존치시킬 실익이 없으므로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함(안 제2조)

다. 녹색성장위원회 폐지함(안 제3장)

- 1) 2010. 11. 30. 제정 시행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자문기관으로서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부터 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2. 12.~3. 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조례 제2518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4호, 제7조제1항, 제4장 제목, 제15조 조제목·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 조제목·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별표 5”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 6”을 “별표 2”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별표 6”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PP포대”를 “폴리프로필렌 마대(이하 “PP”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도·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 전 제6항) 중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 공급·판매 방법) 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판매자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판매가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아니할 때
2. 군수가 정한 영업상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신고를 한 장소와 다른 장소로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제19조 조제목 “(쓰레기 봉투의 매수)”를 “(종량제봉투의 매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봉투의”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주지시켜야”를 “주지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별표 5”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방법과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3과 같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따른 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공원법」에 의

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6조 제목 “(권한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등)”을 “(권한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임할 수 있다.”를 “위임한다.”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표 3으로, 별표 5를 별표 1로, 별표 6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3(중전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중전 별표 5) 제목 중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생 략)</p> <p>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u>쓰레기봉투</u>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u>별표 5</u>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u>쓰레기봉투</u>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u>별표 6</u>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5.~7.(생 략)</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에 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u>쓰레기 봉투</u>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u>별표 6</u>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⑤~⑥ <삭제 2004. 2. 10></p> <p>⑦ (생 략)</p> <p>제4장 <u>쓰레기 봉투</u>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p> <p>제15조(<u>쓰레기봉투</u>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① <u>쓰레기 봉투</u>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현행과 같음)</p> <p>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u>종량제봉투</u>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u>별표 1</u>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u>종량제봉투</u>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u>별표 2</u>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5.~7.(현행과 같음)</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u>종량제봉투</u>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u>별표 2</u>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 제7항과 같음)</p> <p>제4장 <u>종량제봉투</u>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p> <p>제15조(<u>종량제봉투</u>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① <u>종량제 봉투</u>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p>

현 행	개 정 안
<p>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 쓰레기 및 자연정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야 한다.</p> <p>② <u>쓰레기봉투</u>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괴성 봉투와 <u>P·P포대</u>로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p> <p>③ <u>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u></p> <p>제16조(<u>쓰레기 봉투의 제작</u>) ① <u>쓰레기봉투</u>는 군수가 제작한다.</p> <p>② 군수는 <u>봉투</u>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거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u>쓰레기 봉투</u>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u>쓰레기 봉투</u>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p> <p>⑤ <u>제2항에 따른 쓰레기 봉투사양은 별표 2와 같다.</u></p> <p>⑥ <u>쓰레기 봉투</u>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체결한다.</p>	<p>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 쓰레기 및 자연정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야 한다.</p> <p>② <u>종량제봉투</u>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괴성 봉투와 <u>폴리프로필렌 마대(이하 “PP”라 한다)</u>로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p> <p>③ <u>종량제봉투의 크기·용도·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6조(<u>종량제봉투의 제작</u>) ① <u>종량제봉투</u>는 군수가 제작한다.</p> <p>② 군수는 <u>종량제봉투</u>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거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u>종량제봉투</u>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u>종량제봉투</u>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p> <p><u><삭 제></u></p> <p>⑤ <u>종량제봉투</u>에 사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체결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판매소의 신고) ① <u>쓰레기봉투</u>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소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군수는 <u>쓰레기봉투</u>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u>쓰레기봉투</u>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u>쓰레기봉투</u>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p>	<p>제17조(판매소의 신고) ① <u>종량제봉투</u>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소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군수는 <u>종량제봉투</u>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u>종량제봉투</u>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u>종량제봉투</u>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p>
<p>제1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① <u>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공급을 아니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u> 2. <u>판매자의 영업상 준수 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3. <u>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u> 4. <u>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u> <p>② <u>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이 쓰레기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u></p>	<p>제18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방법) ① <u>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판매자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판매가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u></p> <p>② 군수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아니할 때</u> 2. <u>군수가 정한 영업상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3. <u>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신고를 한 장소와 다른 장소로 변경한 경우</u> 4. <u>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u> <p>③ <u>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쓰레기 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입한 <u>봉투의</u>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u>단</u>, 한번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것은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u>쓰레기봉투</u> 판매소에 이를 <u>주지시켜야</u> 한다.</p>	<p>제19조(종량제 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입한 <u>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u>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u>다만</u>, 한번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것은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u>종량제봉투</u> 판매소에 이를 <u>주지해야</u> 한다.</p>
<p>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u>별표 5와</u>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u>쓰레기봉투의</u> 판매가격으로 한다. 4.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u>폐기물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2와</u> 같다. <p>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은 <u>별표4 제1호 기준에 의하고 봉투판매</u> 가격은 <u>별표4의 2와</u>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p>	<p>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u>별표 1과</u>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u>종량제봉투의</u> 판매가격으로 한다. <p><삭 제></p>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u>종량제봉투 가격</u> 산정방법과 공급·판매 가격은 <u>별표 3과</u> 같고, <u>대형폐기물 스티커</u> 공급·판매 가격은 <u>별표 4와</u> 같다.</p>
<p>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u>당해</u>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u>쓰레기 봉투</u>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u> 한다.</p>	<p>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u>각 호</u>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u>해당</u>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u>종량제봉투</u>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u>해야</u>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u>의한 도시계획시설</u>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p> <p>2. 공원(「도시공원법」에 <u>의한</u>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u>의한</u> 공원을 포함한다)</p> <p>3.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p> <p>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u>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 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u>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u> 한다.</p> <p><u>제26조(권한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등)</u>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u>위임할 수 있다.</u></p> <p><u>제27조(시행규칙)</u> 이 조례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u>다른 군계획시설</u>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p> <p>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u>다른</u>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u>다른</u> 공원을 포함 한다)</p> <p>3.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p> <p>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u>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를</u>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u>해야</u> 한다.</p> <p><u>제26조(권한위임)</u>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u>위임한다.</u></p> <p><u><삭 제></u></p>

[별표 3]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가격(제21조제2항 관련)

1.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text{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 \text{제작비} + \text{판매이익}$$

- (주)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록카, 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 2) 수수료자립도는 거창군의 기존 자립도·대행체제에서 직영으로 변경될 때의 부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함.
- 3)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퍼센트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함.

2.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가격

(단위: 원)

용량	공급 가격	판매 가격	비고
3리터	45	50	○1매당 가격 ○판매이익 9퍼센트
5리터	91	100	
10리터	182	200	
20리터	364	400	
50리터	819	900	
100리터	1,638	1,800	
<u>50리터</u> (pp)	<u>964</u>	<u>1,060</u>	<신 설>
100리터 (pp)	1,929	2,120	

【별표 4】 <신 설>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판매 가격(제21조제2항 관련)

규격별	공급 가격	판매 가격	비고
1,000원권	910원	1,000원	○1매당 가격 ○판매이익 9퍼센트
2,000원권	1,820원	2,000원	
3,000원권	2,730원	3,000원	
4,000원권	3,640원	4,000원	
5,000원권	4,550원	5,000원	
10,000원권	9,100원	10,000원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62
----------	---------

제출자	2019. 4. 8.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현재 인터넷신고와 읍면사무소 방문신고로 운영 중인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봉투(PP) 50리터를 추가하여 환경미화원의 무게부담을 줄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방법 등 정비(안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표 4)

- 1)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행 규정 신설
- 2)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격 규정 신설

나. 종량제봉투(PP) 50리터 판매가격 신설(안 별표 3)

다. 건설폐기물매립장 폐쇄에 따른 규정 등 정비(안 제21조제1항제4호)

- 1) 건설폐기물 처리수수료 규정과 별표 5의2 삭제

라.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용어 정비(조례 전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8.~3. 2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조례 제2519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를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해야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제4호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준용한다.”를
“준용함”으로 하며 같은 조에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
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음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관리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화장실 관리비 일부 또는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2. 군수가 시설노후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u></p>	<p><u>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u></p>
<p>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u>설치하여야 한다.</u>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 한다.</u> 3. 필요할 경우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u>설치할 수 있다.</u>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u>설치할 수 있다.</u>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u>준용한다.</u>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u>설치해야 함</u>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u>해야 함</u> 3. 필요할 경우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u>설치할 수 있음</u>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u>설치할 수 있음</u>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u>준용함</u> 6. <u>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음</u>
<p>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u>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13조(관리비 등 지원) ① 군수는 <u>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화장실 관리비 일부 또는 편의·위생품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군수는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u> 2. <u>군수가 시설노후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u>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주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19-42
----------	---------

발의일자	2019. 4. 18.
발 의 자	이홍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알림장치 등 설치근거 신설(안 제5조제6호)
- 나. 개방화장실의 관리비 지원과 지원중단 사유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8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본예산 720만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3. 26.~3. 3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조례 제2520호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은 자로부터 진료 등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건당 500원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3. 이미 발급된 진단서 등의 재발급: 건당 300원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와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응급의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 진료와 예방접종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및 방문 진료
6.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7. 국가, 경상남도 또는 거창군이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 지원
8.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9.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1.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12.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13.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4조(진료비등의 납부방법) 진료비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

받은 날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제5조(진료비등의 반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등을 반환해야 한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등을 면제받은 사람에게 그 면제받은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59
----------	---------

제출연월일	2019. 3. 1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치조례가 통합되어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명, 제1조)

1) 조례 적용대상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2) 제명 :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3) 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함(제2조)

1)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기준 따른다.

2) 수수료 : 현행) 진료비가 포함된 수수료 규정
 변경) 수수료만 알기 쉽게 규정함

다.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를 정함(제3조)

라. 진료비등의 납부방법을 정함(제4조)

마. 진료비등의 반환 등을 정함(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2. 22.~3.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규칙 제1258호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심의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수도사업소장”을 “사업소장”으로 “제2조제2항제4호”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에 제출하여야”를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성격 및 기능) ① 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군수를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그 밖에 심의회에 심의·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p><삭 제></p>
<p>제3조(위원)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본청 담당관·국장·과장, 직속기관장 및 수도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제3조(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군수, 부군수, 본청 담당관·국장·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p>

제7조(의안제출) ①~② (생략)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16조(수당 등) 제3조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안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행과 같음)

<삭제>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9-40
----------	---------

제출일자	2019. 4. 24.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 이유

조례·규칙심의회 위원구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구성 변경함(안 제3조)

- 1) 군수, 부군수, 본청 담당관·국장·과장, 직속기관장, 수도사업소장
⇒ 군수, 부군수, 본청 담당관·국장·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 2) 체육시설사업소장,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설로 총 위원수 24명

나. 법령이나 조례 재기재 사항 삭제(안 제2조, 제16조)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위원회 기능
- 2)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위원회 수당근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22.~4. 1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규칙 제1259호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제10조제1항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3조 조 제목 “(업무 및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을 “노인복지관의 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업무 및 기능”을 “기능”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 환자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설의 구분) 거창군 삶의 쉼터는 <u>노인복지회관</u>,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으로 구분하되 통합하여 관리·운영한다.</p>	<p>제2조(시설의 구분) 거창군 삶의 쉼터는 <u>노인복지관</u>,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으로 구분하되 통합하여 관리·운영한다.</p>
<p>제3조(업무 및 기능) ① <u>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② 여성복지회관의 <u>업무 및 기능</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③ 장애인복지관의 <u>업무 및 기능</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p>	<p>제3조(기능) ① <u>노인복지관의 기능</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 ② 여성복지회관의 <u>기능</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복지관의 <u>기능</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현행과 같음)</p>
<p>제4조(이용대상) ① <u>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u>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해당 노인의 배우자로 한다. ②~③ (생략)</p>	<p>제4조(이용대상) ① <u>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u>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해당 노인의 배우자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 입장거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u>전염성 질환자</u> 2.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p>	<p>제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 입장거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u>감염병 환자</u> 2.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p>
<p>제9조(운영 감독) ① <u>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업무 및 회계서류를 조사 또는 감사하도록 할 수 있다.</u> 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u></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식당운영) ① <u>군수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장애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u> ②~③ (생략)</p>	<p>제10조(식당운영) ① <u>군수는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장애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u>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운영규정) ① <u>수탁자는 삶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라 자체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1. <u>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u> 2. <u>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u> 3. <u>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물품관리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에 삶의 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u></p>	<p>제11조(운영규정) <u>수탁자는 삶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u> <삭제></p>
<p>제12조(준용규정) <u>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u></p>	<p><삭제></p>
<p>제13조(세칙) <u>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u></p>	<p><삭제></p>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9-36
----------	---------

제출일자	2019. 4. 8.
제 출 자	행복나눔과장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함

- 1) 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안 제2조·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10조제1항)
- 2) 전염병 ⇒ 감염병(안 제5조제1호)

나. 법령 재기재나 계약으로 정할 사항 등 삭제

- 1) 수탁자 감독규정, 수탁자 자체규정(현행 제9조·제11조제2항)
- 2) 준용규정, 세칙(현행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2. 28.~3. 2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규칙 제1260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 기준) ①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2박 이상은 지원기준의 50퍼센트를 추가 지급하며, 여행업체당 한 번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으려는 여행업체는 여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급시기)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 대상 및 규모)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군 관광이 1박 이상 포함된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군에 유치한 여행업체 2. 내국인 관광객이 1회 2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1회 10명 이상의 규모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농촌 체험마을 내 숙박시설에 유료 투숙하도록 한 여행업체	제2조(지원 기준)	①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2박 이상은 지원기준의 50퍼센트를 추가 지급하며, 여행업체당 한 번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신청)	① 여행 7일전에 관내 숙박이 포함된 단체 관광객 방문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광객 유치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조(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으려는 여행업체는 여행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 관광객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광객 유치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기준 및 시기)	① 보상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1명 1박당 8,000원 2.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1명 1박당 10,000원 3. 수학 여행단을 유치한 경우 1명 1박당 2,000원 ② 2박 이상은 지원기준의 50퍼센트를 추가 지급하며, 여행업체당 1회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원 시기는 매분기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별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

대상	규모	금액(단위: 원)		사업	
		그날	1박	그날	1박
내국인 관광객	20명 이상	1인당 5,000	1인당 10,000		
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	1인당 5,000	1인당 10,000	관광지와 음식점 중 각 1개소 이상 이용	숙박시설 1박 이상 투숙
수학 여행단	40명 이상	1인당 3,000	1인당 5,000		

1. 내국인 관광객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조례 제2조제1호
2. 외국인 관광객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조례 제2조제2호
3.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 및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업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 체험마을 내 숙박시설을 말한다.
▷조례 제2조제5호와 규칙 제2조제2호 통합

[별지 제1호서식]

단체 관광객 <u>유치</u> 계획서			
<input type="checkbox"/> 여행사 현황			
여행사명		대표자	(남/여)
업체주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
<input type="checkbox"/> 방문계획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 수학여행단체 <input type="checkbox"/>)			
방문기간	20 . . . ~ . . . (박 일)		
인원	총: 명(남: 여:) [내국인: (남: 여:), 외국인: (남: 여:)]		
관광코스			
숙박예정업소명			
식사예정업소명			
방문계획일정	붙임과 같음		
<p>우리 여행사(단체)의 단체관광객 거창 방문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신청인 여행사명:</p> <p style="margin-left: 250px;">대표자: (직인)</p> <p>거창군수 귀하</p>			
붙임서류	1. 여행 일정표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붙임

여 행 일 정 표

시간			관광내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분)		
첫 째 날				
둘 째 날				

[별지 제2호서식]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							
□ 여행사 현황							
여행사명		대표자					(남/여)
업체주소							
업종				등록연월일/등록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 ()			
□ 유치실적 (방문기간: 20 . . . ~ . . .)							
숙박업소명/ 음식점명	이용일자	인원 (명)					비고
		계	내국인	외국인	수학 여행	여행사 관계자	
□ 지원금 신청내역 (그날 □, 1박 □)							
구분	인원(명)	지원금액(원)			비고		
계					여행사관계자 제외		
내국인							
외국인							
수학여행단							
<p>「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대표자: (직인)</p>							
거창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1. 관광객 숙박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음식점 이용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1부 3. 관광지 방문 증명사진(별지 제5호서식) 1부.						

[별지 제3호서식]

관광객 숙박 확인서

알선 여행사

여행사명		대표자	(남/여)
업체주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연 락 처	(휴대전화)		팩스:

알선 내역

기 간	숙박인원(명)		국적	인 술 자		비고
	관광객	여행사 관계자		성 명	연 락 처	
	남: 여:	남: 여:		남: 여:		

위와 같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 민사·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대표자: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서류: 영수증 1부(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다만,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별지 제4호서식]

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						
여행업체	여행사명			대표자	(남/여)	
	업체주소	(전화:)				
	인솔자	직책:	성명:	(남/여)휴대전화:		
음식점내역	음식점명			전화번호		
	소재지					
	결제금액 (원)	금	원(금		원정)	
	이용인원	일자	구분	계	관광객	여행사 관계자 (운전자·안내원)
		. . .	조식·중식·석식		남: 여:	남: 여:
. . .		조식·중식·석식		남: 여:	남: 여:	
. . .		조식·중식·석식		남: 여:	남: 여:	
<p>위와 같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 민사·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확인자 업소명:</p> <p style="margin-left: 200px;">대표자: (인)</p>						
<p>거창군수 귀하</p>						
<p>붙임서류: 영수증 1부(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다만,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p>						

[별지 제5호서식]

관광지 방문 증명 사진	
관광지명	

- 안내판, 이정표 등을 활용하여 관광지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 2개소 이상 촬영
- 관광객 유치 지원금은 사진 내 촬영된 인원수로 인정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9-34
----------	---------

제출일자	2019. 4. 8.
제 출 자	문화관광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된 관광객 유치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객 유치지원 기준 조정(안 별표)

1) 지원 사업 확대

(현행) 1박 이상 포함된 관광상품으로 관광객 유치한 경우

(변경) 단체 관광객을 1박 이상 투숙하게 하였거나, 관광지과 음식점 중 1개소 이상을 그날 이용하게 한 경우

2) 지원 금액 조정

나. 그 밖에 조문체계, 별지서식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11.~4. 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규칙 제1261호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군의회 의장이”를 “군의회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대학교수 및”을 “대학교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여성단체 및”을 “여성단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회의를 마치면 자동 해산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제7조제2항 중 “소관업무”를 각각 “환경정책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거창군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 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u>자로</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의회 의장이</u> 추천하는 의원 2. <u>대학교수 및</u>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그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u>자</u> 3. 관내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u>여성단체 및</u> 지역언론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u>자</u>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거창군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 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u>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u>사람으로</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의회에서</u> 추천하는 의원 2. <u>대학교수,</u>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그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u>사람</u> 3. 관내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u>여성단체,</u> 지역언론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u>사람</u> <p><u>③ 위원회는 회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회의를 마치면 자동 해산한다.</u></p> <p><u><삭 제></u></p>
<p>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u><삭 제></u></p>
<p>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u>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u></p>	<p>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p> <p>1. <u>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u></p> <p>2. <u>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u></p> <p>3. <u>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u>소관업무</u>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u>소관업무</u> 담당자가 된다.</p> <p>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p>	<p><u><삭 제></u></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u>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u></p> <p>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u>환경정책업무</u>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u>환경정책업무</u> 담당자가 된다.</p> <p><u><삭 제></u></p>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9-23
----------	---------

제출일자	2019. 3. 5.
제 출 자	환경과장

1. 제안 이유

환경위원회 회의가 일정하게 정하여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몇 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현 실정에 맞게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 나. 위원의 임기 조항 삭제(안 제3조)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2. 12.~3. 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규칙 제1262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조제목·본문, 제5조제4항, 제6조 조제목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규격별·금액별로 포장하여 공급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종량제봉투의 크기·용도 등)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크기·용도 및 형태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 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제1호 중 “부착하여야 한다.”를 “부착해야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게시하여야 한다.”를 “게시해야 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제4호 중 “부착하여야 한다.”를 “부착해야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판매자는 군수가 공급한 대형폐기물 스티커 외 다른 스티커를 판매해서는 안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문구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해서도 안됨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별표 4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구입 배부하여야 한다.”를 “구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를 “60리터 범위에서 공급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보관 및 판매소 공급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5호·제5의2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u>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신고</u>)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u>쓰레기 봉투 판매소</u>(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5조(<u>판매소의 신고 수리 등</u>) ①~③ (생략) ④ 군수는 <u>쓰레기 봉투</u>의 원활한 공급과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읍·면장에게 판매소의 추가선정을 지시할 수 있다.</p> <p>제6조(<u>쓰레기 봉투의 공급절차</u>) ① <u>쓰레기 봉투는 규격에 따라 10매부터 50매까지의 단위로 포장하여 군수가 공급한다.</u>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9조(<u>봉투판매자 준수사항</u>) 조례 제17조에 따라 판매소로 신고수리된 판매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자는 지역주민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지판을 <u>부착하여야 한다.</u> 2. 봉투 판매자는 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봉투판매 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u>게시하여야 한다.</u></p>	<p>제4조(<u>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신고</u>)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u>종량제봉투 판매소</u>(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5조(<u>판매소의 신고 수리 등</u>)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u>종량제봉투</u>의 원활한 공급과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읍·면장에게 판매소의 추가선정을 지시할 수 있다.</p> <p>제6조(<u>종량제봉투의 공급절차</u>) ① <u>군수는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규격별·금액별로 포장하여 공급한다.</u> 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u>종량제봉투의 크기·용도 등</u>) ① <u>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크기·용도 및 형태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u> ② <u>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 안내 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u></p> <p>제9조(<u>봉투판매자 준수사항</u>) 조례 제17조에 따라 판매소로 신고수리된 판매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자는 지역주민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지판을 <u>부착해야 함</u> 2. 봉투 판매자는 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봉투판매 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u>게시해야 함</u></p>

현 행	개 정 안
<p>3. 판매자는 군수가 공급한 규격봉투의 다른 봉투를 <u>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u></p> <p>4. 판매자는 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투를 <u>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0조(대형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장 처리 수수료 납부) ①~③ (생략)</p> <p>제12조(무료제공의 방법) ① 조례 제2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에게 공급하는 <u>쓰레기 봉투</u>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지원예산으로 <u>구입 배부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공급량은 1인당 월 <u>60ℓ</u>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3조(읍면 위임) 조례 제26조에 따라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쓰레기 봉투의 보관 및 판매소 공급</u></p> <p>3.~5. (생략)</p>	<p>3. 판매자는 군수가 공급한 규격봉투의 다른 봉투를 <u>판매해서는 안됨</u></p> <p>4. 판매자는 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투를 <u>판매해서는 안됨</u></p> <p>5. 판매자는 군수가 공급한 대형폐기물 스티커 외 다른 스티커를 <u>판매해서는 안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문구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해서도 안됨</u></p> <p>제10조(대형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장 처리 수수료 납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별표 4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다.</u></p> <p>제12조(무료제공의 방법)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감면대상자에게 공급하는 <u>종량제 봉투</u>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지원예산으로 <u>구입한다.</u></p> <p>② 제1항의 공급량은 1인당 월 <u>60리터</u> 범위에서 공급한다.</p> <p>제13조(읍면 위임) 조례 제26조에 따라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보관 및 판매소 공급</u></p> <p>3.~5. (현행과 같음)</p>

【별표 1】 <신 설>

중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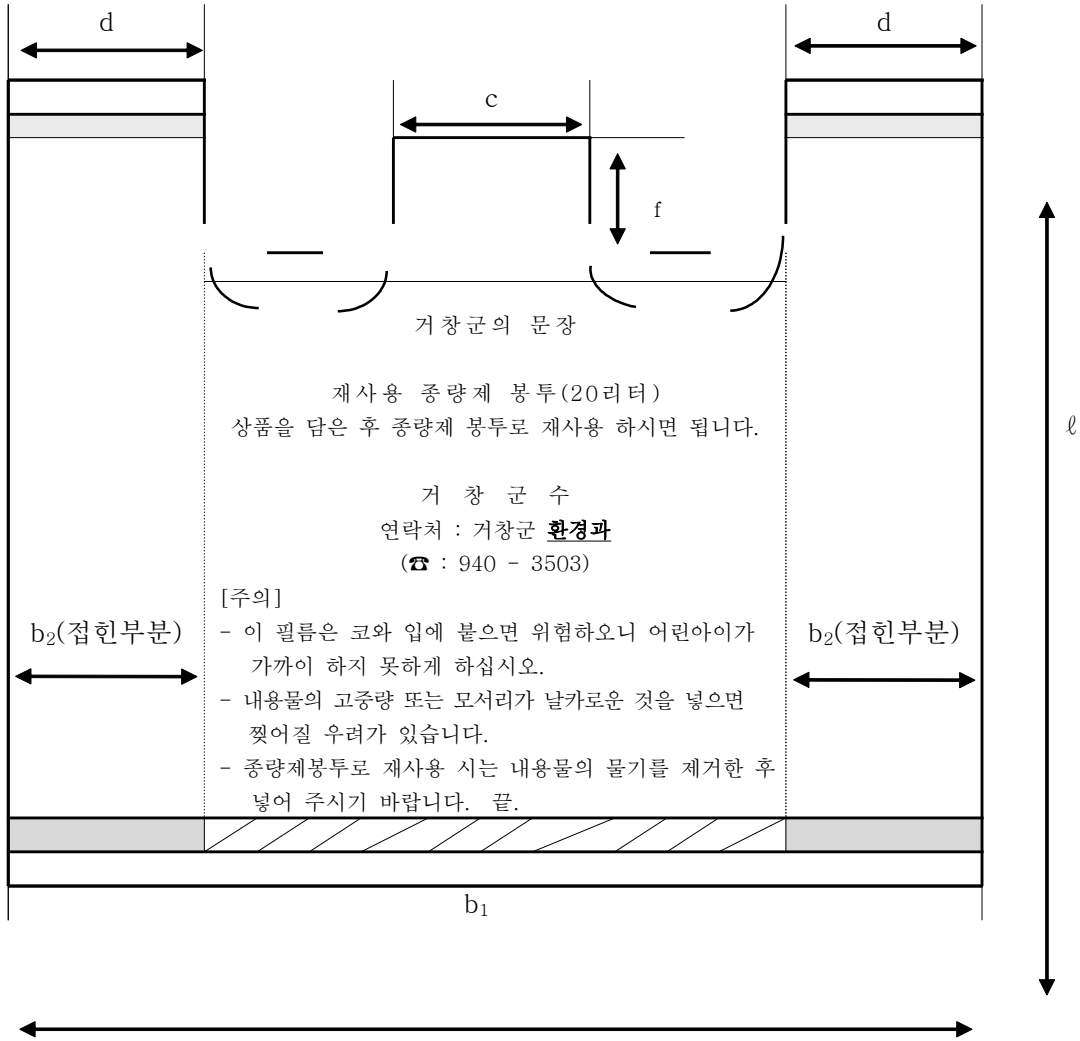
봉투의 용량	용도
3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u>음식물전용</u>
5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u>음식물전용</u>
10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u>재사용</u>
20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u>재사용</u>
50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u>재사용</u>
100리터	일반용(가정, 사업장)
<u>50리터(PP)</u>	<u>일반용(가정, 사업장)</u>
100리터(PP)	일반용(가정, 사업장)

【별표 2】 <신 설>

종량제봉투의 형태

□ 재사용봉투

1. 봉투 형태



- 비고 1. l 은 봉투의 높이, 봉투의 나비는 접힌 부분을 펼친 전체나비 b_1+2b_2 로 하고, b_1 은 봉투의 마무리 나비, b_2 는 접힌 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 c 는 묶는 선 폭, d 는 손잡이 끈 폭, f 는 묶는 선 길이임.
2. 그림중의 사선부분 및 검게 칠해진 부분은 열접합 부분을 나타내고 사선부분은 평접합 부분을 검게 칠해진 부분은 거싯접합 부분을 나타냄.

□ 음식물전용봉투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거창군 로고)		
중량제봉투 (○리터) -음식 쓰레기 전용 -		
1. 이 봉투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입니다.		
2. 과일껍질, 채소찌꺼기, 음식찌꺼기등 음식물 쓰레기의 물을 꼭 짜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거 창 군 수		
연락처 : 거창군 <u>환경과</u> 연락처(940-3503)		
이 봉투는 <u>환경부</u> 의 재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 한국프라스틱 규격 제품임.		
제작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으로 부터 표시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 하거나 청색 (DIC 579, 녹색DIC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4】 <신 설>

대형폐기물 스티커(제10조제4항 관련)

스티커	내원바탕색
1,000원권	연녹색
2,000원권	분홍색
3,000원권	하늘색
4,000원권	주황색
5,000원권	보라색
10,000원권	빨강색



[별지 제5의2호서식]

<앞면>

<u>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신청서</u>				처리기간
				1 4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판매소위치 (소재지)		상 호 (영업내용)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판매소의 <u>대행</u> 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신청인: (인) </div>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수수료
				없 음

접수증				
신청인	주소		접수번호	
	성명			

거창군수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목적	1.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 관련 업무 2. <u>중량제봉투</u> 판매소 신청 등 관련 업무 3. 그 밖에 폐기물 반입·배출 등 관련 업무
2. 개인정보 수집항목	<input type="checkbox"/> 성명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주소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신청서·대장: 2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항목별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전자정부법」 제38조·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동의하지 않음)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div>	

[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조사서(제5조관련)			결 재	담당자	주사	과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영업내용			
영업소 위 치						
현지 상황	판매대상 지역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장			
	가옥구분 소유구분		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그 밖에 차가, 차가 사용			
	영업소 거주 유무		유무			
인 근 판매소와 거 리	동	서	남	북	비 고	
	미터	미터	미터	미터		
조사자 종 합 의 견						
조 사 연월일			조사자 성 명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u>중량제봉투</u> 판매소 신고증(제5조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소의 위 치			
판매소 구 분			
<p>「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u>중량제봉투</u> 판매소로 신고·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인)</p>			

<뒷면>

제 호 변 경 사 항		
신고연월일	상 호 및 명 의	확 인 (인)

◆ 영 업 상 유 의 사 항 ◆

1.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해야 합니다.
4. 종량제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해야 합니다.

○ 판매소 위치 변경 시에는 신규로 신고해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종량제봉투 공급 판매 계약서

거창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종량제봉투의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종량제봉투의 공급과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이란 “갑”이 “을”에게 종량제봉투를 인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매”란 “을”이 군민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공급 및 판매) ① “갑”은 “을”에게 판매능력의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종량제봉투를 수요자에게 지정된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

- ② “갑”은 “을”에게 제품을 인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파손, 수량부족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종량제봉투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판매자에게 공급한다.
- ④ 쓰레기 배출자가 이어나 그 밖의 개인적인 사유로 구입한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한 가격으로 매수해야 한다.

제4조(가격) ①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갑”이 정하여 지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공급가격으로 “을”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한다.
-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야 한다.
- ④ “갑”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가격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한 후 10일 이내에 “을”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5조(대금결제) “을”은 신청한 종량제봉투 공급가격을 종량제봉투 인수 시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6조(영업상 준수사항) ① “을”은 종량제봉투 보관·판매방법 등에 관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 ② “을”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홍보와 종량제봉투 판매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임등)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관리업무와 사무처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처리는 이 계약에 따른다.

제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하며 재계약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이 계약은 계약 만료일부터 30일전까지 “갑” 또는 “을”에 의하여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이 계약 기간을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계약변경)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이 계약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폐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의 관계 조항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을”에게 최고하고 최고 후 30일 이내에 시정 또는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갑”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계약 조항을 위배하였을 때
3. “을”이 30일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아니할 때
4. 3개월 평균 판매량이 월 300매 이하일 때(자연마을 단위 제외)
5. “을”이 고의적으로 “갑”의 활동을 방해하였을 때

제11조(장부비치)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할 경우 “갑”과 “을”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

1. “갑”: **종량제봉투** 공급수불부,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2. “을”: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제12조(계약의 해설) 이 계약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그밖의 사항) ①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은 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거창군수 (인)

을: 거창군 읍(면) (인)

[별지 제9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대행관리대장(제5조관련)

신고번호	상호	위치	성명	전화번호	비고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목적	1.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 관련 업무 2. <u>중량제봉투</u> 판매소 신청 등 관련 업무 3. 그 밖에 폐기물 반입·배출 등 관련 업무
2. 개인정보 수집항목	<input type="checkbox"/> 성명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주소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신청서·대장: 2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항목별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전자정부법」 제38조·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동의하지 않음)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div>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판 매 소		<input type="checkbox"/> 폐업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신고서(제8조관련)	처 리 기 간
				즉 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영 업 소 위 치		
사 유				
휴업일경우의 휴업기간				
<p>「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p> <p>판매소를 <input type="checkbox"/> 폐업 <input type="checkbox"/>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구비서류: <u>종량제봉투</u> 판매소 신고증(폐업의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목적	1.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 관련 업무 2. <u>중량제봉투</u> 판매소 신청 등 관련 업무 3. 그 밖에 폐기물 반입·배출 등 관련 업무
2. 개인정보 수집항목	<input type="checkbox"/> 성명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주소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기간	신청서·대장: 2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항목별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전자정부법」 제38조·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동의하지 않음)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div>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9-39
----------	---------

제출연월일	2019. 4. 8.
제 출 자	환경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되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금액별로 제작·공급하여 군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절차 정비(안 제6조제1항)
- 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제5호)
- 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스티커 모양·색깔 등을 규정(안 제10조제4항, 별표 4)
- 라.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도 및 형태,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 표지판을 정함(안 별표 1~별표 3)
- 마.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용어정비(안 제4조·제5조·제6조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3조,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9. 3. 8.~3. 2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보건소 검사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서명생략

2019년 5월 15일

거창군 훈령 제431호

거창군 보건소 검사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검사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비) ①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사비를 받을 수 있다.

1. 흉부직접촬영: 4,370원
2. A형간염항체IgG 검사: 10,000원
3. A형간염항체IgM 검사: 10,000원
4. B형간염항원검사: 2,460원
5. B형간염항체검사: 3,110원
6. C형간염항체검사: 3,870원
7. AST(SGOT) 간기능검사: 1,700원

8. ALT(SGPT) 간기능검사: 1,670원
 9. 혈장헤모글로빈 빈혈검사: 3,880원
 10. 트리요도타이로닌 갑상선호르몬 검사: 10,000원
 11. 유리싸이록신 갑상선호르몬 검사: 10,000원
 12. 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 14,000원
 13. 운전면허적성검사: 5,000원
- ② 그 밖에 검사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보건소 검사비에 관한 규정

1. 제안이유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검사비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비 징수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1) 위임근거 : 조례 제2조제2항

2) 검사비 종류 : 혈액검사, 흉부직접촬영, B형간염검사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지정(변경)·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08-51호(2008.10.22.)로 지정되고, 거창군 고시 제2010-22호(2010.05.04)로 지정(변경)·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11-108호(2011.12.23), 제2012-72호(2012.06.29), 제2012-118호(2012.10.30)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제2018-21호(2018.02.14.)로 지정(변경)·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미래전략과(☎055-940-3363)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5. 15.

거창군수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일반)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20번지 일원
- 면 적 : 42,353.6m²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지역산업의 육성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 거창군수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3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거창군)

5.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 C10. 식료품제조업, C11. 음료제조업, C24. 1차 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6.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4,689.5	감)200.6	34,488.9	100.0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1차 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34,689.5	감)200.6	34,488.9	100.0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2,353.6	-	42,353.6	100.0	
산업시설용지	34,689.5	감)200.6	34,488.9	81.4	
공공시설용지	7,664.1	증)200.6	7,864.7	18.6	
도 로	2,866.6	-	2,866.6	6.8	
배 수 지	308.1	-	308.1	0.7	
수질오염방지시설	41.4	-	41.4	0.1	
주 차 장	129.9	-	129.9	0.3	
구 거	309.4	-	309.4	0.7	
녹 지	4,008.7	증)200.6	4,209.3	10.0	

○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변경 없음)

○ 총괄표

류 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2	1,061 (285)	12,239 (2,517.6)	1	790 (285)	8,464 (2,517.6)	-	-	-	1	271	3,775
중로	1	271	3,775	-	-	-	-	-	-	1	271	3,775
소로	1	790 (285)	8,464 (2,517.6)	1	790 (285)	8,464 (2,517.6)	-	-	-	-	-	-

※ ()안은 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50	12	집산 도로	271 (-)	가조석강 1413	가조석강 1413	일반 도로	석강2 농공 단지	거고22호 (10.5.6)	
기정	소로	1	67	4~ 10	집산 도로	790 (285)	가조석강 1413	가조석강 1426	일반 도로	-	거고22호 (10.5.6)	

※ ()안은 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	주차장	가조면 석강리 1428	129.9	-	129.9	거고22호 ('10.5.6)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	녹지	완충녹지	가조면 석강리 1249 일원	4,008.7	증)200.6	4,209.3	거고22호 ('10.5.6)	

4)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가조면 석강리 1426	308.1	-	308.1	거고22호 ('10.5.6)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없음)

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 단지내도로 : 285m(폭 4~10m), 배수지 1기, 비점오염원처리시설 1개소

나. 오수처리장 현황(비점오염원처리시설, 가조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부지면적 : 41.4m²
- 규 모 : 3,835m³/일
- 사 업 비 : 41백만원
- 처리방법 : 여과형 시설

다. 용수공급 및 배수장 현황

- 부지면적 : 308.1m²
- 배수지용량 : 300m³/일
- 사 업 비 : 123백만원
- 용수공급 : 지방상수도 연결(공업용수 699.4m³/일, 생활용수 14.2m³/일)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붙임(변경 없음)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석강제2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	가조면 석강리 1420 일원	42,353.6	-	42,353.6	거고22호 ('10.05.06)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없음)

- 도로
- 총괄표

류 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	1,061 (285)	12,239 (2,517.6)	1	790 (285)	8,464 (2,517.6)	-	-	-	1	271	3,775
중로	1	271	3,775	-	-	-	-	-	-	1	271	3,775
소로	1	790 (285)	8,464 (2,517.6)	1	790 (285)	8,464 (2,517.6)	-	-	-	-	-	-

※ ()안은 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50	12	집산 도로	271 (-)	가조석강 1413	가조석강 1413	일반 도로	석강2 농공단지	거고22호 ('10.5.6)	
기정	소로	1	67	4~10	집산 도로	790 (285)	가조석강 1413	가조석강 1426	일반 도로	-	거고22호 ('10.5.6)	

※ ()안은 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주차장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	주차장	가조면 석강리 1428	129.9	-	129.9	거고22호 (10.5.6)	

녹 지(변경)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	녹지	완충녹지	가조면 석강리 1249 일원	4,008.7	증)200.6	4,209.3	거고22호 (10.5.6)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녹지	· 면적 변경 - 4,008.7m ² → 4,209.3m ² 증)200.6m ²	·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수도공급설비(변경 없음)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가조면 석강리 1426	308.1	-	308.1	거고22호 (10.5.6)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번 호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합 계		34,689.5	34,488.9	-	-	34,689.5	34,488.9	-
-	A1	17,184.6	16,984.0	1	가조면 석강리 1420	6,303.9	6,103.3	
				2	가조면 석강리 1421	5,605.7	5,605.7	
				3	가조면 석강리 1422	5,275.0	5,275.0	
-	A2	17,504.9	17,504.9	1	가조면 석강리 1430	5,487.3	5,487.3	
				2	가조면 석강리 1431	5,529.0	5,529.0	
				3	가조면 석강리 1432	6,488.6	6,488.6	

■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A1-1	가조면 석강리 1420	· 면적 변경 - 6,303.9m ² → 6,103.3m ² 감)200.6m ²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녹지가 증가되어 면적 감소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1 A2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거창군청 미래전략과(055-940-33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관련도서 게재생략). 끝.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 적(m ²)		소유자	비 고
				대장	편입		
합 계				42,353.6	42,353.6		
1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18	수	41.4	41.4	거창군	
2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19	도	349.0	349.0	거창군	
3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20	장	6,303.9	6,303.9	주식회사 해성종합식품	
4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21	장	5,605.7	5,605.7	주식회사 지에프에스	
5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22	장	5,275.0	5,275.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부일농산	
6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23	구	42.2	42.2	거창군	
7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24	구	267.2	267.2	거창군	
8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25	공	1,524.2	1,524.2	거창군	
9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26	수	308.1	308.1	거창군	
10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27	도	2,517.6	2,517.6	거창군	
11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28	차	129.9	129.9	거창군	
12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29	공	2,484.5	2,484.5	거창군	
13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30	장	5,487.3	5,487.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부일농산	
14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31	장	5,529.0	5,529.0	주식회사 지에프에스	
15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32	장	6,488.6	6,488.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동성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15.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382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282-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408	2009-07-02	2019-05-15	행정구역명(거창+함양군) 활용	
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998-11, 998-12, 998-13, 998-14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382	2009-07-02	2019-05-15	행정구역명(신원면+차황면) 반영	
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37-1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5길 59	2009-04-01	2019-05-15	행정구역명 마상리가 반영된 다섯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387-1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천동길 77-54	2009-04-01	2019-05-15	마을 뒤편에 물맛이 좋은 우물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91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9-21호('19.02.28)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291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291호선)	가조	마상	소로	2	291	73	8	671	가조면 마상리 405-1	가조면 마상리 418-1	거고21호 ('19.02.28)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가조면 마상리 일원(소로2-29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열람기간: 신문개제 익일로부터 14일간

4.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0.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가조면			5,586	617					
1	마상리	405 - 1	임	428	24		거창군			
2	마상리	405 - 2	임	285	55		거창군			
3	마상리	405 - 4	임	39	39		거창군			
4	마상리	405 - 5	임	73	4		거창군			
5	마상리	425	대	216	4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25	최동수			
6	마상리	400	구	3,395	58		국(농림수산부)			
7	마상리	406 -1	대	134	123		거창군			
8	마상리	407 -1	대	278	242		거창군			
9	마상리	418 -1	도	738	68		거창군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및 열람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주소: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이나 전화(055-940-3592, 3595), FAX(055-940-3579), Email : chanung@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2. 개정이유

- 가. 2019.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회원제로 운영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앞서
- 나. 국토부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운행범위, 바우처 택시, 회원제 등에 대한 기준 및 표준절차를 마련한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내용에 맞게 변경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제7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를 말함

- 다. 비 휠체어 차량도 교통약자 이용차량으로 운행 가능하도록 규정(제9조)
- 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사전등록·심사를 받도록 규정(제11조)
 - 이용대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 규정을 신설함
- 마. 운전자의 준수사항 명시(제15조)
- 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규정(제16조)
 - 관내요금은 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하, 관외요금은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하
- 사.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에 관한 규정 신설(제17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5. 9. ~ 2019. 5. 29.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경제교통과
- 전화번호 : 055)940-3388, FAX : 055)940-3349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안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과장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 ⑧ 군수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철도요금 또는 농어촌버스요금) 이하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

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철도요금 또는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거창군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때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군을 관할하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최선을 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위탁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례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 이동지원센터 (☎0000-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수 신 : ○○○ 귀하(○○동 ○○번지)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용대상자와 의 관계
이용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 유형	<input type="checkbox"/> 영구장애 (장애)		<input type="checkbox"/> 일시적 장애 ()	
차량 유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input type="checkbox"/> 일반 차량	
이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정 사유				
년 월 일				
○거창군수(이동지원센터장) (인)				

210mm×297mm

관 계 법 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150명당 1대를 말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거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돌발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 조례(규칙)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예찰·방제단 설치 및 위치를 정함. (안 제2조)

(1)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나. 예찰·방제단 임무를 정함. (안 제3조)

(1)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기타사항 등

다. 예찰·방제단 구성을 정함. (안 제4조)

(1) 예찰·방제단, 행정지원반, 예찰·방제반으로 구분하여 반별 반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단장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된다.

(3) 행정지원반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예찰·방제반원은 식물방제관, 담당공무원 및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라. 예찰·방제단 운영(안 제5조)

(1) 연중 운영, 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대규모 확산 방지 노력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5.11. ~ 2019.5.30.(20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농업기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4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과

- 전화번호 : 055)940-8193, FAX : 055)940-817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자치법규명 : 거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9-
----------	-------

제출일자	2019. . .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 이유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돌발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 조례(규칙)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예찰·방제단 설치 및 위치를 정함. (안 제2조)

(1)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나. 예찰·방제단 임무를 정함. (안 제3조)

(1)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기타사항 등

다. 예찰·방제단 구성을 정함. (안 제4조)

(1) 예찰·방제단, 행정지원반, 예찰·방제반으로 구분하여 반별 반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단장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된다.

(3) 행정지원반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예찰·방제반원은 식물방제관, 담당공무원 및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라. 예찰·방제단 운영(안 제5조)

(1) 연중 운영, 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대규모 확산 방지 노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물방역법」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1조의4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5. 1. ~ 5. 2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분석결과반영

거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거창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거창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시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 협조 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 및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 개발 및 홍보
7.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행정지원반과 예찰·방제반으로 구성하되, 각 반별 반원은 반장을 포7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된다.

③ 행정지원반원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예찰·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
3.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2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31조(방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1. 7. 14., 2011. 11. 14.,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때에는 방제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1. 방제를 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중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6으로 이동 <2011. 7. 14.>]

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 2017. 12. 3] [대통령령 제28450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3조의2(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1명과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분부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분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③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수립
2.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지원
3.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대 국민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 13.]

제3조의3(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의 예산·기술 지원
4. 지방자치단체와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13.]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2. 27.] [농촌진흥청고시 제2017-36호, 2017. 12.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3과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분류동정"이란 병해충의 예찰과정 등에서 발견된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의 종명 및 계통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위험평가"란 병해충 분류동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분류동정이 끝난 병해충의 국내분포·국내자생·침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생태적 특성과 농작물에 대한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제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외래병해충"이란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는 병해충으로서 지리적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으로부터 침입되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을 말한다.
4. "돌발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5. "국내 미기록 병해충"이란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는 병해충으로서 지리적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으로부터의 침입 여부가 불확실한 병해충을 말한다.
6. "공적방제"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병해충예찰·방제단

제4조(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① 농촌진흥청은 법 제3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라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중앙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고, 농촌지원국장이 단장이 되며, 예찰과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총괄대책반을 둔다.

③ 중앙예찰·방제단의 예찰과 방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는 각각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두며, 소속기관의 장은 대책반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는 법 제31조의4제2항과 영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시·도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두고 중앙예찰·방제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시·군·자치구에는 법 제31조의4제2항과 영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시·군·구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두고 시·도예찰·방제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중앙예찰·방제단, 시·도예찰·방제단, 시·군·구예찰·방제단에는 예찰과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법 제33조2항에 따라 예찰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⑦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 체계 및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요약은 별표 1과 같다.

⑧ 제1항부터 제6항 이외에 시·도예찰방제단과 시·군·구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2(예산의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6항의 예찰조사원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3(예찰조사원의 구성 및 운영) ①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의 구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예찰·방제단, 시·도예찰·방제단, 시·군·구예찰·방제단의 지역여건,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예찰조사원을 상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 제3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2. 농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원
3. 식물병해충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4. 농업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5. 작물보호제 및 종묘류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식물병해충 예찰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식물병해충 관련 대학생, 대학원생,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및 식물방제관으로 재직할 경력자가 있는자

③ 예찰조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예찰, 분포조사, 역학조사 지원
2. 병해충 방제업무 지원
3. 중앙예찰·방제단, 시·도예찰·방제단 및 시·군·구예찰·방제단에서 부여하는 임무
4. 병해충 발생정보 수집 및 제공(요청자료 포함)
5.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홍보, 기술·자료 제공 및 발표
6. 그 밖에 병해충 발생의 예찰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예찰조사원은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앙예찰·방제단, 시·도예찰·방제단 및 시·군·구예찰·방제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 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농촌진흥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 농촌진흥청장은 중앙예찰·방제단, 시·도예찰·방제단 및 시·군·구예찰·방제단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신청인 중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한다.
3.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고 예찰조사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예찰조사원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이 부진한 때나 불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찰조사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⑥ 예찰조사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⑦ 중앙예찰·방제단, 시·도예찰·방제단 및 시·군·구예찰·방제단의 장은 예찰조사원의 활동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예찰조사원 활동실적 대장이나 같은 서식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⑧ 예찰조사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찰조사원 단독 또는 식물방제관과 합동으로 병해충 발생 예찰·방제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 경우
2. 중앙예찰·방제단, 시·도예찰·방제단, 시·군·구예찰·방제단에서 실시하는 긴급 예찰 및 방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 중앙예찰·방제단, 시·도예찰·방제단, 시·군·구예찰·방제단이 요청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병해충 예찰·방제관련 기술·정보 자료를 발표·제공 등 업무를 지원한 경우

제5조(병해충예찰·방제단의 역할)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찰·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적인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시·도예찰·방제단에 대한 예산·기술 지원
4.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찰·방제 협조체계 구축
5. 방제비 지원,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
6. 병해충의 분류동정, 위험평가, 정보분석, 기술개발

② 제4조제4항에 따른 시·도예찰·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역의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2. 해당 지역의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에 대한 예산·기술 지원
4. 방제 비용의 부담, 손실보상 및 생계안정비용 등에 관한 업무
5.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개발

③ 제4조제5항에 따른 시·군·구예찰·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역의 병해충 예찰 시행, 방제 집행 및 보고
2. 시·군·구예찰·방제단의 예산 집행
3. 방제 비용의 부담, 손실보상 및 생계안정비용 등의 집행

제6조(병해충 전문교육) 농촌진흥청장 및 각 도와 특별자치도의 농업기술원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병해충예찰·방제대책회의

제7조(병해충예찰·방제대책회의 구성) ① 중앙예찰·방제단장은 영 제3조의3, 제6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병해충예찰·방제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대책회의에는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의장은 중앙예찰·방제단장이 된다.

③ 대책회의 당연직은 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촌진흥청의 재해대응과장, 연구운영과장, 운영지원과장, 국립농업과학원의 작물보호과장, 국립식량과학원의 작물기초기반과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원예특작환경과장
2.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방제과장

④ 대책회의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책회의에서 결정할 주요사항과 관련된 해당 시·도예찰·방제단장이나 시·군·구예찰·방제단장
2. 의장이 추천하는 병해충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3.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병해충예찰·방제대책회의 임무) 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해당 외래병해충과 돌발병해충에 대한 방제 여부
2.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긴급방제 여부
3.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제명령
4.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식물 등이 파묻힌 토지의 발굴 허가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약제의 확보, 양도, 약제 구입비 보조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병해충예찰·방제대책회의 운영) ① 의장은 매년 정기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8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발견 병해충을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책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긴급방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장 병해충 예찰

제10조(예찰계획의 수립)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해충 예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찰 대상 병해충 : 법 제32조제3항의 방제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병해충과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농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2. 예찰내용 및 방법 등 : 농촌진흥청의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요강(이하 "농작물예찰·방제요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조(병해충 예찰포장 지정 및 운영) ① 중앙예찰·방제단장은 필요하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해당 작물 병해충 예찰포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예찰·방제단장과 시·군·구예찰·방제단장은 농작물예찰·방제요강에 따라 예찰포 및 관찰포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병해충 예찰결과의 보고) 중앙예찰·방제단, 시·도예찰·방제단, 시·군·구예찰·방제단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13의 조사지역에서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직후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의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에 입력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 발견 시 보고) ① 중앙예찰·방제단, 시·도예찰·방제단, 시·군·구예찰·방제단은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한 때나 제1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는 발견된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의 표본이나 사진, 발견일자, 발견지역, 발견기주, 발생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신고 접수) 중앙예찰·방제단, 시·도예찰·방제단, 시·군·구예찰·방제단은 법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라 식물을 재배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 발생 신고 시 이를 접수해야 한다.

1.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제15조(병해충 정밀검사 의뢰 등) ① 중앙예찰·방제단, 시·도예찰·방제단, 시·군·구예찰·방제단은 제13조의 보고 또는 제14조의 발생신고 접수 즉시 병해충의 정확한 분류동정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과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밀검사신청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배자의 성명, 재배 장소 또는 발견 장소
2. 신고대상 식물의 품종 및 수량
3. 병해충명(신고자가 추정하는 병해충명을 포함)
4. 발견 연월일(식물이 고사한 경우 고사한 연월일)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의 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3조의 병해충 발생신고를 받은 중앙예찰·방제단, 시·도예찰·방제단, 시·군·구예찰·방제단은 식물방제관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진단·조치하도록 한다.

④ 현장에서 식물방제관이 직접 진단한 결과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제병해충이 아닌 경우 정밀검사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정밀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16조(병해충 분류동정)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5조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발견 병해충에 대한 분류동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의 분류동정 결과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이면,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역학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미기록 병해충은 법상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에 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에 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병해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조치) 중앙예찰·방제단장 또는 제16조제2항,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시·도예찰·방제단장은 해당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공적방제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약제 살포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적방제 담당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병해충 발생정보 발표) 중앙예찰·방제단장은 제12조, 제16조에 따른 예찰 및 분류동정 결과를 토대로 필요에 따라 해당 병해충의 발생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제19조(분포조사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규칙 제37조의10에 따라 해당 병해충의 분포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분포조사 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바로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분포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포조사는 병해충의 발생지역 및 발생면적, 병해충 발생정도 또는 피해율, 그 밖에 법 제31조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분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병해충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병해충 방제

제20조(방제계획의 수립) ① 법 제31조의4 및 영 제3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해충 방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제의 기본방향
2.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
3.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4.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공동방제 등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긴급방제를 할 때에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방제명령 등) ① 제9조 및 법 제3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병해충에 대하여 바로 방제명령을 하는 등 공적방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2항에 따라 긴급방제를 하려면 시행규칙 제38조의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방제명령서를 방제대상 식물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긴급방제 이외의 공적방제를 할 때에도 시행규칙 제38조의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방제명령서를 준용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공적방제를 하려는 때에는 방제시행 14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하려는 경우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방제 지역 및 기간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공적방제나 긴급방제를 할 때에는 식물방제관으로 하여금 방제현장에 입회, 지도 및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예찰한 병해충을 공적방제 할 때에는 식물검역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36조3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 등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제4항에 따라 공적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방제요령) ① 병해충별 적용약제와 사용방법을 따른다. 다만, 적용약제가 등록되지 않았을 때에는 제8조의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회의에서 유사한 병해충이나 외국의 사례, 시험연구결과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적용약제와 방제방법이 없는 경우 긴급과제를 수립하여 약제를 선발하고 방제방법을 결정 할 수 있다.

제23조(공적방제 대상식물에 대한 소독·폐기방법) ① 공적방제 식물 등에 대한 소독이 필요할 때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의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을 준용한다.

② 공적방제 대상 식물에 대한 폐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몰 : 발생포장 또는 그 인근의 토지(수원지 또는 하천 인근이 아닌 장소에 한한다)에 구덩이를 파고 식물을 투입한 후 중간 및 상단부에 식물류 1톤당 생석회 40kg을 살포한 후 60cm 이상 흙을 덮는다.
2. 소각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식물 방제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각할 수 있다.
3. 증열처리 : 100℃ 이상의 끓는 물에 1시간 이상 증열 처리한다.
4. 가공처리 : 방제대상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고 수일 내의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처리할 가공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였음에도 농작물예찰·방제요강에 별도의 소독·폐기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 방법을 따르거나 방제대상 병해충 또는 식물의 생리·생태적 특성상 별도의 소독·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24조(공동방제)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방제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면 관할구역에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다.

제25조(방제결과 보고) 시·도지사가 법 제36조의 방제명령을 하였을 때는 방제 완료 후 바로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명령 이행기간이 수년에 걸친 경우에는 매 연도별로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방제효과 확인) 농촌진흥청장은 제25조에 따른 방제결과 보고를 받은 때에는 폐기 또는 약제 살포 등의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의 발굴허가 및 관리) ①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의 발굴 금지기간 내에 토지를 발굴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식물 등이 파묻힌 토지 발굴 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굴 하였을 때 병해충의 확산 가능성 여부
2. 파묻힌 식물 등의 발굴 방법
3. 발굴된 식물 등의 처리 방법
4. 기타 해당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등

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파묻힌 식물 등을 안전하게 발굴하고 해당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발굴이 허가된 토지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발굴 이행사항을 확인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가 법 제36조의 방제명령을 하여 토지에 매몰을 하였을 때는 매몰된 식물 등과 대상 병해충, 매몰 연월일과 발굴 금지기간,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명예 식물감시원의 운영

제28조(명예 식물감시원 구성 및 운영) ①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각 도의 농업기술원이나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으로 명예 식물감시원(이하 "명예 감시원"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명예 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명예 감시원은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단체 등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명예 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2.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예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명예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명예 감시원 본인이 원하거나, 추천한 단체 등에서 퇴직·해임된 때, 추천한 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진 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명예 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③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
- ④ 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식물방제관 등 관계공무원의 병해충 예찰활동·분포조사·방제활동·단속활동 등에 명예 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⑤ 명예 감시원은 명예 식물감시원 추천(신청)서의 활동지역을 관할하는 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명예 감시원을 관리하는 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명예 감시원의 활동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명예 감시원의 활동실적 대장이나 같은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명예 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으면 바로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명예 감시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의 임무 수행
 2. 제4항의 활동에 참석

제7장 포상금의 지급

제29조(포상금 지급)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병해충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의 제13호서식에 따른 병해충 발생 신고서에 사진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예찰·방제단이나 시·도예찰·방제단 또는 시·군·구예찰·방제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가 된 병해충이 포상금 지급 대상 병해충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병해충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될 때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건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2. 이미 해당 병해충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3.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원
- ⑤ 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017-36호,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단 지원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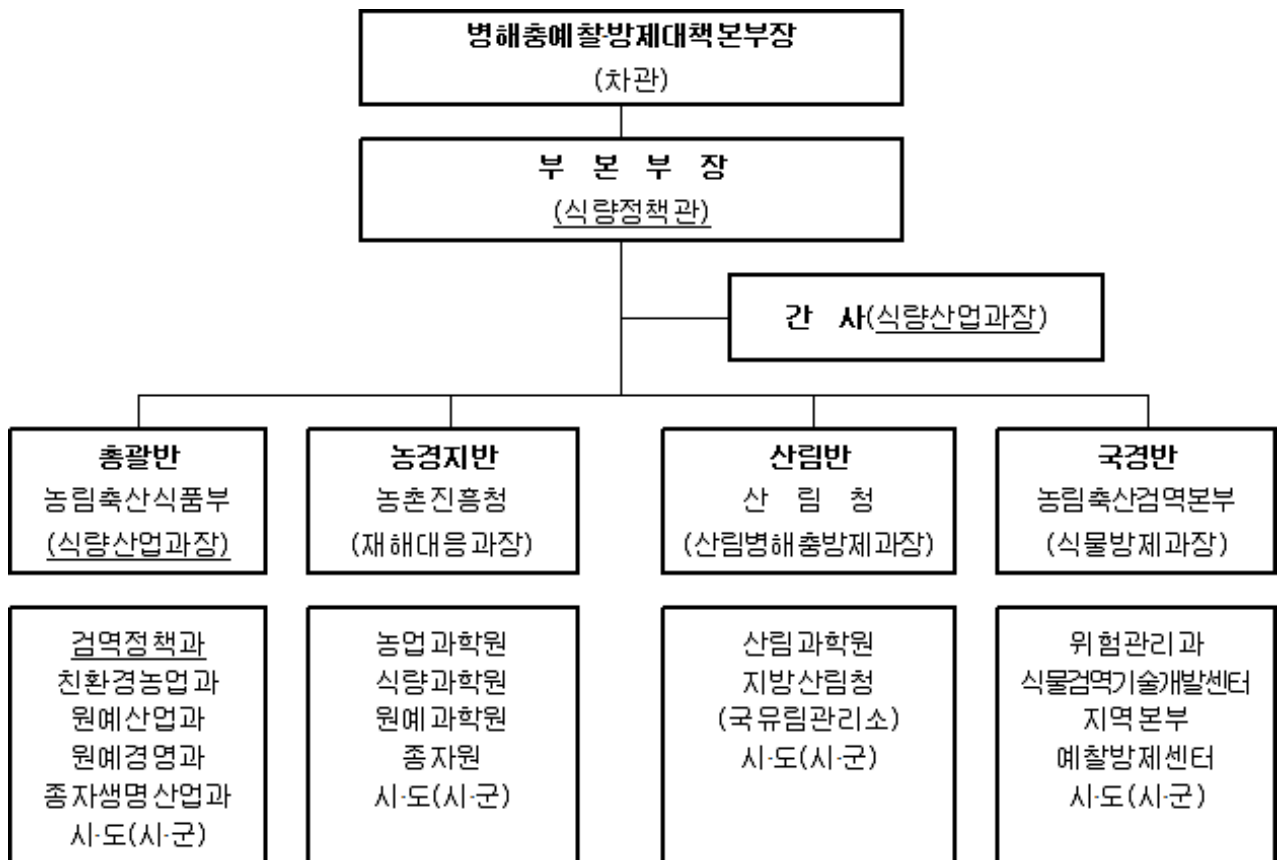
제2조(시기) 병해충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설치한다.

1.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그 외 장관이 병해충대책본부의 설치를 지시한 경우

제3조(구성) ①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장(이하 "병해충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차관이, 부분부장은 식량정책관이 되고, 총괄반,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을 둔다.

② 총괄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농경지반장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산림반장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국경반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으로 한다.

③ 각 반장은 기구표를 참고하여 필요한 반원을 정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임무) ① 병해충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중앙 및 지방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6. 그 밖에 병해충대책본부장이 정한 사항

② 병해충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임무를 총괄·지휘한다.

제5조(운영방법) ① 병해충대책본부 설치시에는 각 반장이 소속한 기관에서 총괄반,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을 편성·운영한다.

② 총괄반은 병해충대책본부 운영 종료시까지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에서 각1명씩 파견을 받아 운영한다.

부칙 <제250호, 2017. 3.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고 제2019 - 665호

도 시 계 획 시 설(교통시설:소로2-79호선, 소로2-80호선) 실 시 계 획 인 가 를 위 한 공 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79호선, 소로2-80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16.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79호선)	거창	가지	소 로	2	79	71	8	1,740	거창읍 가지리 215-8 ~ 거창읍 가지리 223-1	경고 1978-103호 (1978. 3. 20.)	인가일로 부터 12개월간
	도시계획도로 (소로2-80호선)	거창	가지	소 로	2	80	140	8				

2. 사업 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 2-79호선, 소로 2-79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 자	
합계	-	-	-	12,845	1,740					
1	거창읍 가지리	215-8	도	374	59		거창군			
2	“	248	전	1,008	273	경남 김해시 분성로	이*연 외1인			
3	“	246-3	전	694	81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권*복 외2인			
4	“	246-7	전	220	139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유*연 외2인			
5	“	246-6	전	285	141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박*묵			
6	“	246-5	전	661	44	거창군 고제면 산양길	박*영			
7	“	245	전	506	12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이*슬 외1인			
8	“	242	전	1,508	312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백*자			
9	“	243	답	553	160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황*권			
10	“	246-2	대	889	106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유*연			
11	“	247	과	1,260	272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정*철 외1인			
12	“	215-5	도	1,979	92		거창군			
13	“	226	전	2,830	24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김*순 외4인			
14	“	223-1	전	78	25		거창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50132/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3), FAX(055-940-35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16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16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16.

거창군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시행 규모						시행 구간	최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216호선)	마리	말흘	소 로	2	216	164	8	1,294	마리면 말흘리 184-3 ~ 마리면 말흘리 23-1	거창 1993-4호 (1993. 2. 5.)	인가일로 부터 12개월간

2. 사업 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 2-2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읍·면	리			4,800	1,294					
1	마리	말흘	184 -3	도	1546	142		거창군			국
2	마리	말흘	184 -1	대	226	17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이*형			
3	마리	말흘	184 -13	대	41	41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이*형			
4	마리	말흘	184 -14	도	106	10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5	마리	말흘	180 -22	도	9	9		거창군			국
6	마리	말흘	179 -5	도	204	20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7	마리	말흘	179 -3	도	304	71		거창군			국
8	마리	말흘	19 -2	도	20	3		거창군			국
9	마리	말흘	19 -8	도	3	3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신*현 외 1인			
10	마리	말흘	19 -1	도	20	20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양*애			
11	마리	말흘	18 -12	도	132	11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전*택			
12	마리	말흘	18 -19	도	95	33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전*택			
13	마리	말흘	19 -6	도	232	67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신*현 외 1인			
14	마리	말흘	19 -7	도	28	24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신*현 외 1인			
15	마리	말흘	19 -9	도	112	71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신*현 외 1인			
16	마리	말흘	18 -20	도	77	66		거창군			국
17	마리	말흘	19 -10	도	156	108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최*근			
18	마리	말흘	18 -10	대	340	27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신*욱			
19	마리	말흘	23	대	771	37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3가	하*관			
20	마리	말흘	23 - 1	도	378	234		거창군			국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50132/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3), FAX(055-940-35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